

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2. 10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세제 개편,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2023년도 구미시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구미시의회에 그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기관 : 한국지방세연구원

나. 출연예정금액 : 49,767천원

다. 출연필요성

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지자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과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노력하고, 또한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한 법정 출연금에 해당.

라. 법적근거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

3. 참고사항

가. 첨부서류

- 1) 출연 동의요구서(붙임)
- 2) 출연기관 현황(붙임)
- 3) 출연 사업계획서(붙임)

나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

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

다. 예산조치 : 2023년도 예산편성(49,767천원)

라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1) 출연 동의요구서

주관부서	세정과					
기 관 명	한국지방세연구원					
출연대상	○ 일반현황 - 소재지 :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- 주요사업 ·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·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					
출 연 사 업 비	○ <u>출연 예정금액 : 49,767천원(시비 49,767천원)</u>					
	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천 원)					
	구 분	2022년도 예산액	2023년도 예산안			전년대비 증감액
			연구원 요구액	부 서 산정액	증 감	
출연금 (시비 100%)	45,986	49,767	49,767	-	증3,781	
출 연 필 요 성	○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					
근거·법령	○ 지방세기본법 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· 운영) ○ 지방세기본법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· 운용) ○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					
지도감독 부서의견 (총 평)	○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, 정기간행물발간,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, ○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,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, ○ 특히,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(총12명)에서 심의·의결하고 있음 ○ 법정 출연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됨					
첨부자료	1. 출연기관 현황 2. 출연사업계획서					

2) 출연 기관현황

한국지방세연구원

설립근거	「지방세기본법」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				전화번호 : 02-2071-2789 홈페이지 : www.kilf.re.kr	
주요연혁	- 2011.2 설립등기, 2011.4 개원			기관형태	출연	
인원현황 (2022년 8월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		임시직·파견
	85명		69명 (원장1, 부원장1, 연구위원22, 연구원17, 조사분석직6, 전문직3, 사무직18, 시설직1)			16명 (위촉연구원5, 파견공무원9, 청사관리원2)
임원 (2022년 8월 기준)	직책 (직책명)	성명	주요경력			임기
	이사장	백재현	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			2020.12.22. ~ 2023.12.21.
	부이사장	오언석	서울도봉구청장			2022.2.28. ~ 2023.2.27.
	이사	배진환	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			당연직 (2019.11.18. ~ 2022.11.17.)
	이사	진명기	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			당연직
	이사	김선조	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			2022.2.28. ~ 2023.2.27.
	이사	안승대	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			2022.2.28. ~ 2023.2.27.
	이사	김기홍	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			2022.2.28. ~ 2023.2.27.
	이사	황명석	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			2022.2.28. ~ 2023.2.27.
	이사	이충우	경기 여주시장			2022.2.28. ~ 2023.2.27.
	이사	김미경	서울 은평구청장			2022.2.28. ~ 2023.2.27.
	이사	김재욱	경상북도 칠곡군수			2022.2.28. ~ 2023.2.27.
	이사	유태현	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			2021.2.28. ~ 2023.2.27.
	감사	이현정	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			당연직
	감사	김능식	오산시 부시장			2022.2.28. ~ 2024.2.27.
	주요기능	- 지방세입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				
설립자본금 (단위:백만원)		1 (직전연도말 기준)			출자·출연액 (단위:백만원)	88,151 (설립이후 2021년까지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)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20	2021	2022	재무현황 (백만원) ‘21.12.31기준	20,999 (자산 총액)
	예산액	10,855	11,928	14,200		부채 (부채 총액)
	지자체 지원액	8,972	10,821	11,160		자본 (자본금 총액)
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‘21.12.31기준	총수익				총비용	당기순이익
	12,364				11,093	1,282

3) 출연 사업계획서

사 업 명	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	구분	출자	해당없음
주관부서	세 정 과		출연	49,767천원(시비)

① 목적 및 필요성

-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
-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

② 출연개요

- 연구원 운영 예산('22년: 14,200백만원) 중 11,160백만원을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
-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

③ 산출기초

- 출연액 : 49,767천원
- 전전년도 보통세의 1.2/10,000를 출연
 - 출연근거 : 「지방세기본법」 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(단위 : 천원)

구 분	합 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
출연금	290,645	58,551	60,836	67,095	58,177	45,986

④ 기대효과

-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
- 지방재정·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

⑤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, 지방재정·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
-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세기본법」

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수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□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
1. 1만분의 1.2

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

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
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
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
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
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 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
소 관 부 서		세 정 과
입 안 자	과 장	남 재 식
	담 당	임 응 건
	담 당 자	조 수 연 (480-6858)